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<b>배포일시</b>	2018. 2. 2.(금) 총 4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해외건설정책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김성호, 팀장 이두희, 사무관 김지우, 주무관 남혜숙 ·☎ (044) 201-4583, 4813
<b>보도일시</b>		2018년 2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할 해외건설 지원 공사 설립 가시화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…공사 설립 근거 마련

- 해외 인프라,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‘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’ 설립이 가시화됐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’ 설립을 위한 ‘해외건설 촉진법’(법률 제14956호, 2017. 10. 24.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,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, 2월 5일(월) 입법예고(40일간) 했다.
- ‘해외건설 촉진법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(안 제29조의 2~ 안 제29조의 13)
    - (자본금 출자) 법에서 정한 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 수출입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.

- (운영위원회 운영)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·기재부·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·회피 사유를 규정하였다.
- (차입)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산업은행,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하였다.

## ②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(안 제23조)

-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(건설공사, 엔지니어링 업무 5년 → 3년), 직무 분야 확대(건설 → 건설+엔지니어링), 종사 기관 확대(수은, 산은 등)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다.

## ③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(안 제10조)

-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.

## ④ 핵심국 진출 전략 수립 추진(안 제4조)

-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'해외건설추진계획'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.

- ‘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’는 개정안 시행(4. 25.) 이후 발기인 총회,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.
  -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(PPP)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·금융지원,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  -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, 인프라, 금융, 법률 등 해외 투자 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.
    -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며,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.
    - 채용 규모는 임원(사장, 본부장 3, 감사) 5명,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(40일간)이고 관계 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  -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‘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’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    - \* 의견제출처 : ☎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
    - 전화번호: 044-201-4583, 4813, 팩스 : 044-201-5546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지우 사무관(☎ 044-201-4583), 남혜숙 주무관(☎ 044-201-4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

##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 주요 역할

- (주요 업무)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,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·전문적으로 지원
  - (사업 발굴\*)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,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·제안
    -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하여 수주에 활용
  - \* G2G, 자체 발굴,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(단기~중장기)
  - (개발 지원) 금융, 법률,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·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
    -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,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,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
    - \* 지원공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(F/S 등)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
  - (금융지원) 대출 주선,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
    -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장을 위한 융자, 지분 투자 등도 실시
    - \* 지원공사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·채권발행 가능

